

수 원 지 방 법 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57389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3. 6.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김경환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4.11.15.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10. 28.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 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 분	점유의 권 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김지완	302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주택임 차권자	2021.02.26	240,000,000		2021.03.02	2021.02.01		
	302호	권리신고	주거 주택임 차권자	2021.02.26~2 023.06.14	240,000,000		2021.03.02	2021.02.01	2025.10.23.	
<p><비고></p> <p>※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p> <p>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p> <p>비고란</p> <p>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약약서가 2026. 1. 30.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p>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57389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9-13

원하우스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233번길 20-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9.27㎡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8.04㎡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78.04㎡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40.36㎡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32.31㎡

옥탑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9.27㎡(연면적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3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0.5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9-13

대 31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14분의 34.90

감정평가액

276,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2.20

276,000,000

27,600,000

2회

2026.03.25

193,200,000

19,320,000

3회

2026.04.27

135,240,000

13,524,000

4회

2026.06.02

94,668,000

9,466,800

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과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협약서가 2026. 1. 30.자 제
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
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